

KOFIC 현안보고 2023_Vol.04

Korean Film Council

2021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KOFIC 현안보고 2023_Vol.04

2021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신다영 (영화프로듀서)

서선주 (영화진흥위원회 前공정환경조성팀 주임)

공동연구원 이은경 (영화프로듀서)

박은하 (영화프로듀서)

연구보조원 권선국 (영화프로듀서)

발행인 박기용

발행일 2023년 3월 20일

담당부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전화 051)720-4700

팩스 051)729-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ISBN 978-89-8021-234-7 (95680) (PDF전자책)

©영화진흥위원회, 2023

목 차

1. 서론	1
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한계	1
나. 조사 배경 및 범위	3
2.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4
가. 근로표준계약서 연혁	4
나. 설문 응답 특성	6
다. 항목별 설문 분석	8
3.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28
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28
나. 설문 응답 특성	29
다. 항목별 설문 분석	32
4. 결론 및 시사점	46
가. 근로표준계약서 설문 결과	46
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설문 결과	47
다.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방안	48



❖ (2017~2021) 근로/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결과 요약

〈표 1〉 (2017~2021) 근로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극장개봉작 (실질개봉작)	376 (164)	454 (194)	502 (199)	605 (165)	653 (223)
조사대상작	60	63	68	40	113
조사응답수	57	63	68	39	69 [30]*
조사응답률	95%	100%	100%	97.5%	61.1%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건수*	43	49	53	30	39 [27]*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75.4%	77.8%	77.9%	76.9%	56.4% [90.0%]*

* 순제작비 5억 원 미만 작품을 제외한 데이터를 []안 수치로 명기하였다. 2017~2020년 조사 결과와 동일선상 비교를 위해 과거 기준을 반영하여 추가로 데이터를 산출했다.

**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모두 사용률에 산입함

〈표 2〉 (2017~2021)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극장개봉작 (실질개봉작)	376 (164)	454 (194)	502 (199)	605 (165)	653 (223)
조사대상작	60	63	75	62	113
조사 응답수	57	63	74	59	61
조사 응답률	95%	100%	98.7%	95.2%	54.0%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건수	18	19	30	25	28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31.6%	30.2%	41.8%	42.4%	45.9%

*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모두 사용률에 산입함



1. 서론

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한계

1) 표준계약서의 의미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 양식이다.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공정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분야의 계약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서 작성을 촉진하며 계약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산업 내에서 유통되는 계약의 표준 ‘양식’으로서의 의미와 산업 내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¹⁾

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여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견본 계약서를 의미한다. 이때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공표되어있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지침으로서의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의해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고려하여 만든 계약의 표준을 의미한다. 산업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를 통해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계약 지침으로 활용된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예술가의 처우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는데, 이는 계약서 내용의 불공정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계약 당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계약 당사자는 표준계약서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계약서의 내용이 산업 내에서 제정된 표준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만일 표준계약서의 내용보다 하회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표준계약을 토대로 불리한 계약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흔히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의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²⁾ 표준약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분야에서 지켜야 하는 거래 규범을 담고 있다. 분야별 거래 또는 계약의 표준 문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준약관은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내용을 고객(계약 상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표준약관을 사용하였다고 표지에 명시한 계약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³⁾ 즉, 표준약관은 불공정약관의 심사기능으로서 보급하는

1) 강석홍 외,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한국예술경영연구소, 2012, 39면

2)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된 표준약관이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제10062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것이므로 표준계약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모두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계약 또는 약관 체결 후에 발생한다.

3) 표준계약서의 한계

표준계약서는 분야별 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권리 의무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시하지만,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을 규정한 법률⁴⁾은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법률에 강행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분야별 이슈나 변화,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개별 계약의 특성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자체가 즉각적인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표준계약서가 세운 핵심 원칙과 취지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비로소 표준계약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중 영화분야는 근로, 상영, 투자, 시나리오 4개 부문 8종의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어 있다. 영화 분야는 타 문화 분야보다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장관 고시⁵⁾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표 3〉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법적근거	부문	계약서명	제정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	근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2015. 4.	2019. 12.
	상영	영화상영 표준계약서(기본상영)	2014. 10.	
		영화상영 표준계약서(개별상영)	2014. 10.	
	투자	영화투자 표준계약서	2014. 10.	
	시나리오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015. 10.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2015. 10.	
		표준 각본 계약서	2015. 10.	
		표준 각색 계약서	2015. 10.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6항~제9항

4) 영화분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에서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사용 권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의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5) 영화계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장관고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장관 고시가 진행되지 않았다. 단, 표준계약서의 고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 장관 고시 여부와 표준계약서의 인정 여부는 별개라고 볼 수 있다.



나. 조사 배경 및 범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는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제작자-스태프’, ‘제작자-창작자’ 간 계약에 사용되는 근로표준계약서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⁶⁾하여 쟁점별 실제 계약의 추세와 개선 의견 등을 수집하여 주요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와 코픽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의 표준계약서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산업 노사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으로 영화산업의 근로표준계약서 보급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산업은 근로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산업의 근로 조건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본 조사는 2021년 한국영화 극장개봉작을 대상으로 근로표준계약서와 4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2021년 이전의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개봉 스크린 수 50개 이상의 순제작비 4억 원 이상 작품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최초 조사시점 대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가 일정 수준 정착하였으므로 2021년 실태조사부터 그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통계에서의 기준을 적용하되 <표 3>과 같이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기준의 세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사 대상작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라 2021년 실질개봉작 223편 중 110편을 제외한 113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표 4> 2021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대상작 선정 기준

공통기준	구분	세부기준	조사대상
한국영화 극장 개봉작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대상	- 연간 상영회차 40회차 이상 작품 -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화(공연 실황, 재편집 개봉작,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제외 - 영화학교 학생 영화 제외 - 감독판, 무삭제판 등은 원영화에 합산	극장개봉작의 제작사 또는 제작 참여자

<표 5> (2017~2020)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 범위

(단위: 편)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극장 개봉작	376	454	502	605	653
실질개봉작	164	194	199	165	223
조사대상작	60	63	68	40	113

조사의 설문 항목은 최근 5년간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제작사나 창작자 직군 대상으로 시행된 과거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유선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이전 실태조사와 다르게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6) 코픽은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2.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가. 근로표준계약서 연혁

영화분야 근로표준계약서는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던 영화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최초 개발되었다. 최초로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⁷⁾는 영화 제작 시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2년부터 코픽 일부 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표준계약서 의무사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2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발족하여 체결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⁸⁾과 이후 지속적으로 체결된 관련 협약 및 부속 합의 역시 근로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버전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근로시간 범위, 근로시간 측정 기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개되었는데 이는 우선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당시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⁹⁾

2015년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표준보수 지침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¹⁰⁾되었고, 영화노사정협의회¹¹⁾의 합의로 공식화된 근로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상업영화 제작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의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과 사용자단체(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간에 체결한 2015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5년 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일부 다른 버전의 근로계약서 사용에 노사가 합의하였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다시 도래한 2019년에는 산업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진행하던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영화노조가 제작사별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현장별로 합의한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 코픽은 표준계약서의 공식적인 개정을 위해 노사 협의¹²⁾를 추진했고, 2019년 12월 31일 영화산업 노사 양측의 제안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근로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7) 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로 구성

8) 2012년 7월 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중

1. 우리는 기 발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박현섭 외,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 영화진흥위원회, 2010, 56면

10)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제3조의5

11)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2) 1일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가산 조항에 대한 노사의 이견 위주로 협의 진행



〈표 6〉 영화분야 근로표준계약서 및 노사합의 계약서 주요 조문 비교

구분	2015 제정 근로표준계약서 (2015.4.6)	2017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 (2017.2.24.)	2019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 (2019.6.26.)	2019 개정 근로표준계약서 (2019.12.31.)
종류	시간급용, 포괄급용(2종)	시간급용(1종)	시간급용(1종)	시간급용 (1종)
근로시간 및 휴게	- 1주 소정 근로일 5일 일 경우 최대 주 68시간 근로 - 1주 소정 근로일 6일 일 경우 최대 주60시간 근로	- 비회차 근로시간 10시 간으로 한정	- 주 최대 52시간 근로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으로 함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주52 시간 근로
임금	- 1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시간급의 50% 추가 가산 (노사합의에 의해 순제작 비 10억 미만 작품 예외 적용 가능)	- 1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시간급의 50% 추가 가산 - 포괄임금 적용 불가	- 1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시간급의 50% 추가 가산 - 포괄임금 적용 불가	- 1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시간급의 50% 추가 가 산 (노사합의에 의해 순 제작비 30억 미만 작품 예외 적용 가능)
휴일 및 휴가	-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	최소 5일 전 근로자대표 와 합의하여 주휴일 변경	최소 5일 전 근로자대표 와 합의하여 주휴일 변경	
계약의 해지	- '을'이 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	- '을'이 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15일 이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	- '을'이 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15일 이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	- '을'이 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했을 경우 해고일로 부터 30일 전 해고 사전 통지 예외 적용
기타		-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 신설	-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급여공제 신설	

2015년의 근로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2017년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 변경,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2019년 근로표준계약서 1차 개정 등 여러 차례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영화계 전반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내용 이해에 혼란이 생겼고 근로표준계약서 1차 개정 이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는 표준계약서보다 단체 및 개별교섭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된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와 근로표준계약서 가운데 어떠한 것이 표준인가를 구분하거나 분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한 표준약관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현황 조사에서 이를 서로 구분하지 않았다.



나. 설문 응답 특성

1) 조사응답률

설문조사 응답률은 61.1%로 조사 대상 작품 113편 중 69편의 제작자, 프로듀서 또는 해당 작품 참여자가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했다. 유선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 지난 실태조사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아졌다.¹³⁾

〈표 7〉 2021년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설문 범위 및 응답률

구분	편수
2021년 실질개봉작 / 극장개봉작(전체)	224편 / 653편
조사 대상 작품	113편
조사 응답 작품	69편
조사 응답률	61.1%

2) 조사 응답 작품 현황

조사에 응답한 69편의 작품 중 2019년과 2020년에 촬영된 작품은 각 31.9%와 46.4%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고 2021년 촬영 작품은 10.1%, 2018년 작품은 8.7%를 차지했다. ‘영화제작 및 흥행업’이 근로시간 특례제도에서 제외되기 이전인¹⁴⁾ 2016년과 2017년 촬영 작품도 각 1편씩 포함되었다.

〈표 8〉 조사 응답 작품의 촬영(제작) 연도 (n=69)

(단위: 편, %)

촬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분포(편)	1	1	6	22	32	7
비중(%)	1.4%	1.4%	8.7%	31.9%	46.4%	10.1%

조사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분포를 살펴보면,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순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영화는 전체의 26.1%에 불과했다.¹⁵⁾

13) 연도별 근로표준계약서 조사 응답률: 2017(95.0%), 2018(100.0%), 2019(100.0%), 2020(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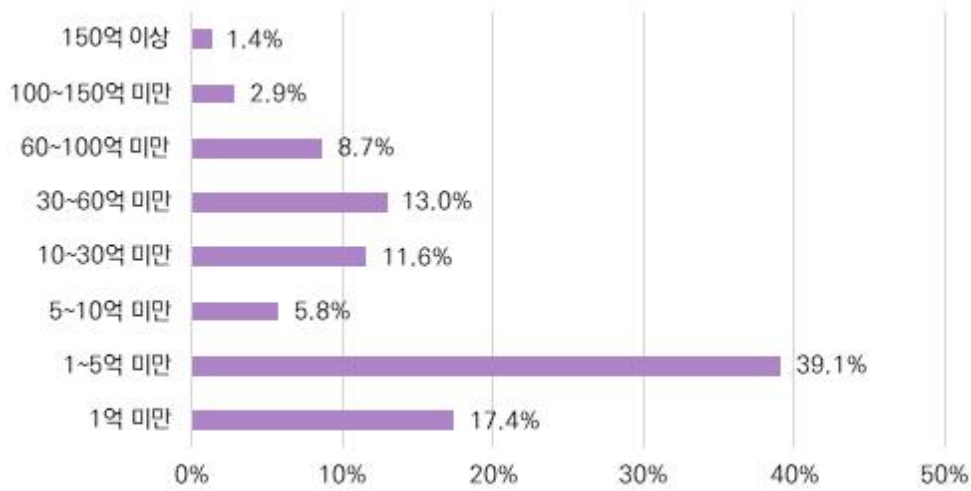
14)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이 제외되었다.

15) 연도별 조사 시 순제작비 30억 이상 상업영화의 분포는 2017년 63.2%(57편 중 36편), 2018년 61.9%(63편 중 39편), 2019년 63.2%(68편 중 43편), 2020년 66.7%(39편 중 26편)다. 반면 2021년 상업영화 분포 비중이 유독 낮은 이유는 표본 범위를 확대한 이유도 있지만 2021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상업영화가 개봉을 연기하거나 극장 상영 대신 OTT 플랫폼으로 직행하여 그 수급의 공백을 주로 저예산영화들이 메웠기 때문이다.



〈그림 1〉 조사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n=6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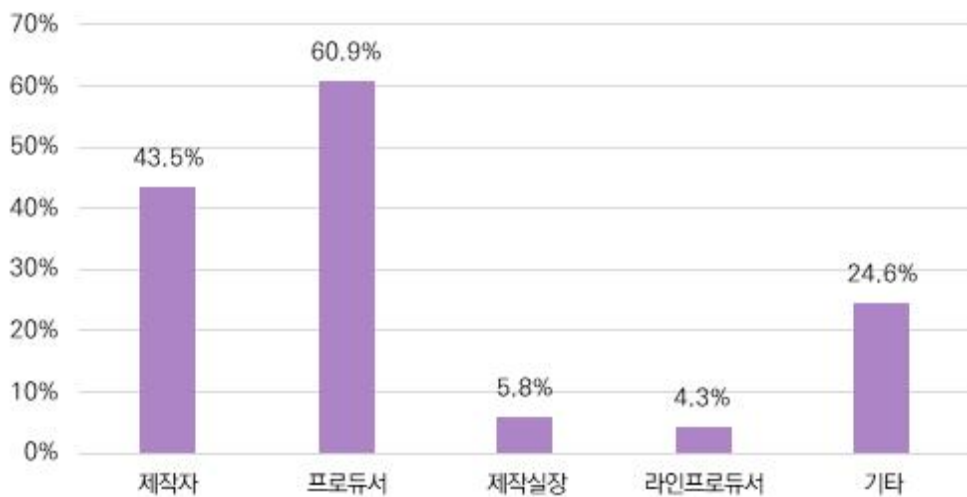


3) 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 응답 작품 내 응답자의 직책을 질문했다. 조사 응답자의 직책은 프로듀서 60.9%, 제작자 43.5%, 기타 24.6% 제작실장 5.8%, 라인프로듀서 4.3% 순으로 분포했다. 기타 응답자 24.6%의 대부분은 감독으로 제작자나 프로듀서 직책을 겸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응답자의 직책 분포 (n=69, 복수응답)

(단위: %)





다. 항목별 설문 분석

1) 근로표준계약서 인지도와 체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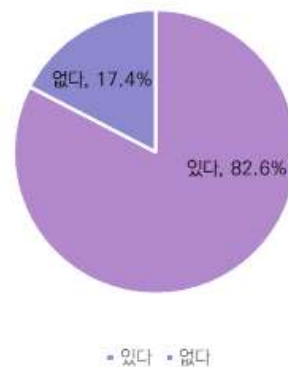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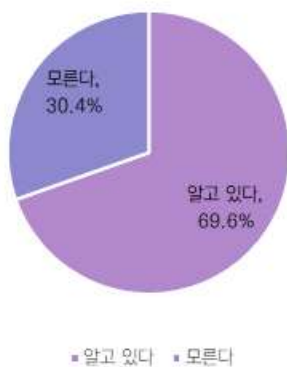
근로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69명 중 92.8%가 ‘알고 있다’ 수준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7.2% 역시 ‘보통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응답자 전체가 보통 이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로 답변한 응답자는 없었다.

〈그림 3〉 근로표준계약서 인지도 (n=69)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해고예고 예외조항 등을 반영하여 노사 협의를 거친 2019년 개정 버전의 근로표준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69.6%로 단순히 ‘근로표준계약서’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의 긍정 응답(92.8%)보다 낮았다.

〈그림 4〉 2019년 개정(1차 개정) 근로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n=69) 〈그림 5〉 조사 응답자의 근로표준계약서 체결 경험 유무 (n=69)





근로표준계약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69명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 조사대상 작품의 스태프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 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만을 따로 분류했을 때도 응답자의 60.0%가 근로표준계약서 체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용역계약 체결작품 응답자 중 40%는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체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2)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2021년 조사 응답 작품 69편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56.5%로 조사되었다. 스태프 고용계약 체결 시 사용한 계약서의 종류는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근로표준계약서 거의 그대로 사용’ 했다는 답변이 27.5%, ‘근로표준계약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 답변이 21.7%,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PGK’) 권장 계약서를 사용¹⁶⁾한 경우가 7.2%이다. 노사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와 PGK 권장 근로계약서는 모두 2019년 개정 근로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강화되거나 일부 삭제된 계약서이다. 따라서 노사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와 PGK 권장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근로표준계약서를 수정한 경우와 동치로 간주하여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이 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은 39.1%,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3%를 차지했다.

〈표 9〉 계약의 종류 및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n=69)

구분	건수	비중
코픽 공표 근로표준계약서 또는 노사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거의 그대로 사용	19	27.5%
코픽 공표 근로표준계약서 또는 노사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	15	21.7%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권장 근로계약서	5	7.2%
용역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27	39.1%
스태프와 계약 체결하지 않음	3	4.3%
계	69	100.0%

아래 표와 같이 순제작비 구간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여부는 작품의 예산 규모와 크게 연관된다. 40회차 이상 상영한 실질개봉작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2021년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56.4%(39편)로 집계되었지만, 순제작비 5억 원 이상 개봉 작품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분류하면, 5억 이상 작품 30편 중 27편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사용률은 90.0%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도 순제작비 4억 이상 작품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 76.9%보다 13.1%p 높은 수치다. 또한 순제작비 30억 이상 상업영화는 모두 근로표준계약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업영화 제작현장은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모두 근로표준계약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업영화 제작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은 이미

16) PGK 권장 근로계약서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간급의 50% 추가 가산 조항,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을 삭제했고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근거를 명시하였다.



보편화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반면 순제작비 10억 미만 저예산영화의 근로계약서 사용률은 32.6%였다.

〈표 10〉 순제작비 구간별 근로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사용(용역계약 또는 미체결) 현황 (n=69)

(단위: 편, %)

구분		표준계약서 그대로 사용	표준계약서 일부 수정	PGK 권장 근로계약서	용역 (프리랜서) 계약서	계약 미체결	순제작비 구간별 소계
1억 미만 (n=12)	편수	0	0	0	9	3	12
	전체 사용 비중	0.0%	0.0%	0.0%	13.0%	4.6%	
	순제작비 구간 비중	0.0%	0.0%	0.0%	75.0%	25.0%	
1~5억 미만 (n=27)	편수	2	7	3	15	0	27
	전체 사용 비중	2.9%	10.1%	4.4%	21.7%	0.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7.4%	26.0%	11.1%	55.6%	0.00%	
5~10억 미만 (n=4)	편수	1	1	0	2	0	4
	전체 사용 비중	1.0%	1.0%	0.0%	3.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25.0%	25.0%	0.0%	50.0%	0.0%	
10~30억 미만 (n=8)	편수	4	1	2	1	0	8
	전체 사용 비중	6.0%	1.0%	3.0%	1.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50.0%	13.0%	25.0%	13.0%	0.0%	
30~60억 미만 (n=9)	편수	5	4	0	0	0	9
	전체 사용 비중	7.0%	6.0%	0.0%	0.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55.6%	44.5%	0.0%	0.0%	0.0%	
60~100억 미만 (n=6)	편수	4	2	0	0	0	6
	전체 사용 비중	6.0%	3.0%	0.0%	0.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66.7%	33.3%	0.0%	0.0%	0.0%	
100~150억 미만 (n=2)	편수	2	0	0	0	0	2
	전체 사용 비중	3.0%	0.0%	0.0%	0.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100.0%	0.0%	0.0%	0.0%	0.0%	
150억 이상 (n=1)	편수	1	0	0	0	0	1
	전체 사용 비중	1.0%	0.0%	0.0%	0.0%	0.0%	
	순제작비 구간 비중	100%	0.0%	0.0%	0.0%	0.0%	
계약서 종류별 소계		19	15	5	27	3	69



〈표 11〉 최근 5년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 비교

(단위: 편,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순제작비 5억 이상
조사응답작품	57	63	68	39	69	30
표준계약서 사용건수	43	49	53	30	39	27
표준계약서 사용률	75.4%	77.8%	77.9%	76.9%	56.4%	90.0%

3)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의 수정 및 준수 여부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적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수정한 조항이 있는지 질문했다. 39편 중 예시로 열거된 주요 8개의 조항 모두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작품 수는 17편, 43.6%였고, 그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고 답변한 작품은 22편, 56.4% 이었다.

조항의 수정은 ‘임금구성과 계산’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근로표준계약서의 시간의 근로수당 영화업 특례조항인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시 50% 추가수당 가산’ 조항을 수정했다는 응답이 28.2%로 2순위를 차지했다. ‘주휴일 및 휴가’ 조항과 ‘근로시간 및 휴계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응답이 각 23.1%와 20.5%를 차지했다. 주요 핵심조항 가운데 수정이 가장 적었던 조항은 ‘휴게 및 휴식시간’ 조항으로 수정 비율은 10.3%다.

〈표 12〉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수정 건수 (n=39, 복수응답)

(단위: 편, %)

구분	수정		미수정		모름		합계
	분포	비중	분포	비중	분포	비중	
주간 최대 근로시간	6	15.4%	33	84.6%	0	0.0%	39
휴게 및 휴식시간	4	10.3%	35	89.7%	0	0.0%	39
임금구성과 계산	13	33.3%	25	64.1%	1	2.6%	39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50% 추가수당 가산	11	28.2%	26	66.7%	2	5.1%	39
주휴일 및 휴가	9	23.1%	30	76.9%	0	0.0%	39
4대 보험 가입	7	17.9%	31	79.5%	1	2.6%	39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사항(1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주휴일 및 휴계시간의 변경)	8	20.5%	30	76.9%	1	2.6%	39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부여	5	12.8%	33	84.6%	1	2.6%	39



상업영화 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적용도가 높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업영화 18편 중 '임금구성과 계산' 항목을 수정했다는 응답이 22.2%였고, 그다음으로 '주간 최대근로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 영화업 특례조항',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부여' 조항 수정이 각 11.1% '주휴일 및 휴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응답이 5.6%로 조사되었다. 휴게 및 휴식시간에 관한 조항과 4대 사회보험 조항을 수정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상업영화 18편중에서 주요 조항 8개 조항 모두를 수정하지 않고 계약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한 작품은 10편이었다.

〈표 13〉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이상)의 근로표준계약서 수정 조항(n=18, 복수응답)

(단위: 편, %)

구분	수정		미수정		모름		합계
	분포	비중	분포	비중	분포	비중	
주간 최대 근로시간	2	11.1%	16	88.9%	0	0.0%	18
휴게 및 휴식시간	0	0.0%	18	100.0%	0	0.0%	18
임금구성과 계산	4	22.2%	14	77.8%	0	0.0%	18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50% 수당 가산	2	11.1%	14	77.8%	2	11.1%	18
주휴일 및 휴가	1	5.6%	17	94.4%	0	0.0%	18
4대 보험 가입	0	0.0%	18	100.0%	0	0.0%	18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사항(1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주휴일 및 휴게시간의 변경)	1	5.6%	17	94.4%	0	0.0%	18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부여	2	11.1%	15	83.3%	1	5.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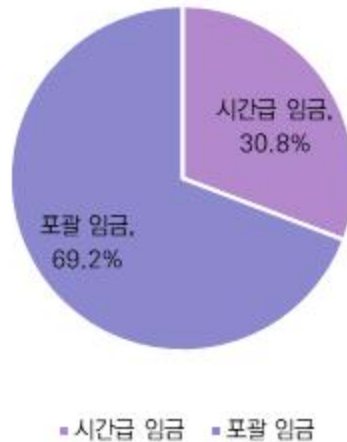
(1) 임금의 계산 방법

2015년 제정된 근로표준계약서는 시간급 임금제와 포괄임금제 2가지 방식의 임금계산방법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2019년 개정 시 악용 가능성이 있는 포괄임금제를 제외하고 시간급 임금제 표준계약서 1종만을 공표하였다. 영화제작현장에서는 2017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시간급 임금제 사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으나,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기한이 종료된 2019년부터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합의한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39편 중 30.8%는 시간급 임금을 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과반인 69.2%가 포괄임금제를 택하였다고 응답했다.



〈그림 6〉 시간급 임금제와 포괄임금제의 분포 (n=39)

(단위: %)



포괄임금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69.2%(27편)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의 실제 구성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실제 근로 가능한 최대치에 준하게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괄 산정하고, 휴일, 야간, 연장 등의 법정 제수당은 별도 가산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55.6%, ‘실제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수준의 법정 제수당을 포함’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응답은 44.4%를 차지했다. 후자의 답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는 실제 근로시간만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표 14〉 포괄임금의 실제 지급구성 내역(n=27)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중 (%)
실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수준의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급 임금	12	44.4%
근로 가능시간 최대치에 준하게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괄 산정하되, 휴일, 야간, 연장 등의 법정 제수당은 별도 가산 지급	15	55.6%
기타	0	0.0%
계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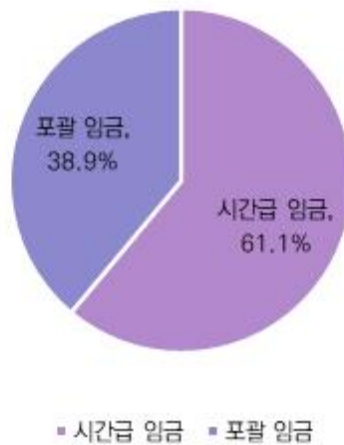
17)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고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적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포괄임금제가 법적 유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포괄계산에 의해 지급된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한 수당액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표본을 제한해서 살펴본 경우 18편 중 61.1%이 시간급 임금을, 38.9%는 포괄임금을 택하였다고 답하였다. 포괄임금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7건은 모두 '실제 근로 가능한 최대치에 준하게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괄 산정하고, 휴일, 야간, 연장 등의 법정 제수당은 별도 가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림 7〉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시간급 및 포괄임금 분포 (n=18)

(단위: %)



〈표 15〉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포괄임금의 실제 구성 내역 (n=7)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중
실제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수준의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0	0%
실제 근로 가능한 최대치에 준하게 기본급과 기본 수당을 포괄 산정하되, 휴일, 야간, 연장 등의 법정제수당은 별도 가산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7	100%
기타	0	0%
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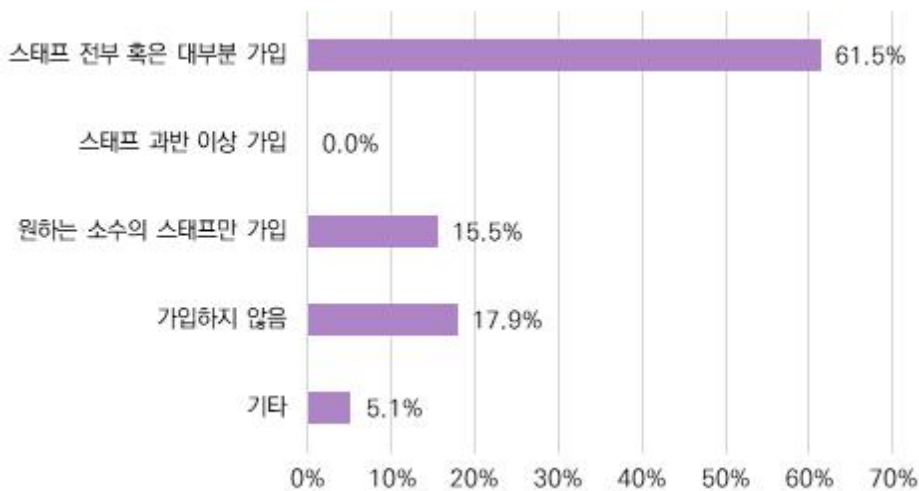
(2)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39편 중 61.5%(24편)는 '스태프 전부 혹은 대부분 가입', 15.5%(6편)은 '원하는 소수의 스태프만 가입'하였다고 답하여, 4대 보험 가입 비중은 77.0%(30편)로 조사되었다. 4대 보험 미가입 작품 비중은 23.0%(9편)다.



〈그림 8〉 4대 보험 가입 여부 (n=39)

(단위: %)



근로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중 일부라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표준계약 체결보다는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용역계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추가 조사의 한계로 설문 제출 응답 그대로 분류하였다.¹⁸⁾ 기타 응답의 경우 스태프의 요청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했다는 답변이다. 상업영화로 한정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상업영화에 해당하는 작품 18편 모두(100%) ‘스태프 전부 혹은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휴일의 규칙적인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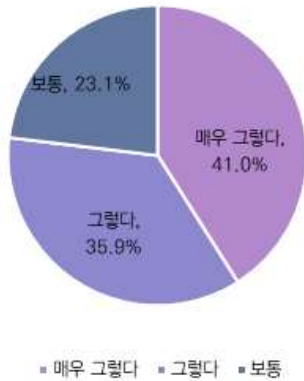
근로표준계약서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주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주휴일을 규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이상의 긍정 응답은 76.9%(30건), ‘보통’은 23.1%(9건)로 조사되었다.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부정 응답은 없었다.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주휴일의 규칙적인 보장 비율이 상승했는데, ‘그렇다’ 이상의 답변 비율은 88.9%로 전체표본의 긍정 응답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통’은 11.1%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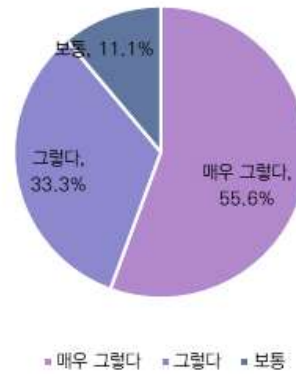
18)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서 ‘근로(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내용이나 조항을 제외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고지하였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용역계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재분류하지 않고 응답자의 답변 그대로 근로계약과 용역계약 사용 건수를 명시하였다.



〈그림 9〉 주휴일의 규칙적인 보장정도 (n=39)



〈그림 10〉 (상업영화) 주휴일의 규칙적인 보장정도(n=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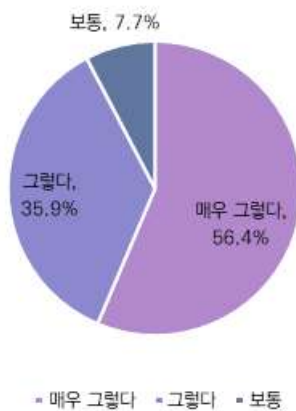


(4)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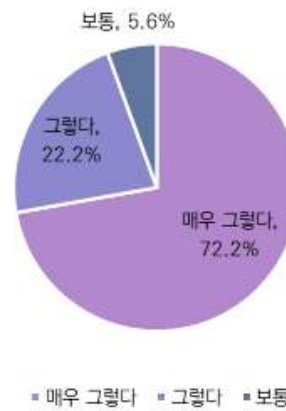
근로표준계약서 제12조 2항은 ‘을’의 근로 종료 후 10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빈번한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¹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조건을 제작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장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 응답은 92.3%로, 주휴일을 규칙적으로 보장했다고 응답한 76.9%보다 높은 비율이다.

순제작비 30억 이상 상업영화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할 경우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94.4%로 연속 10시간 휴식 보장 정도가 전체표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정도 (n=39)



〈그림 12〉 (상업영화) 근로일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n=18)



19)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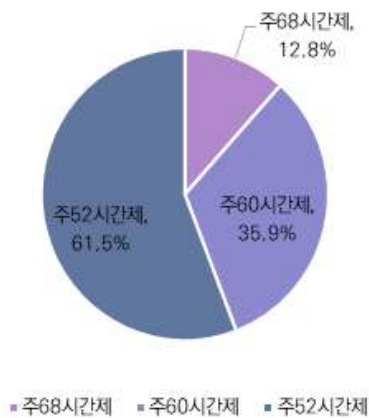


(5) 주간 최대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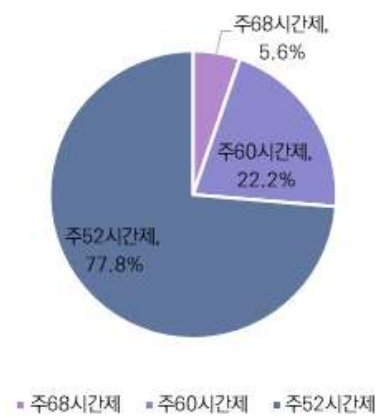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영화 제작 및 흥행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통상의 상업영화 제작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초저예산 작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화 제작 현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작품을 대상으로 제작현장에서 적용한 주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했다. 이 중 주52시간제를 적용하여 현장을 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다. 주 60시간제를 적용했다고 응답한 작품은 35.9%, 주 68시간제를 적용하였다고 응답한 작품은 12.8%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가능 조항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적은 저예산 영화의 주60시간제 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로 응답자를 제한했을 때 응답자의 77.8%가 주52시간제를 택하였다고 답하였고, 22.2%는 주60시간제, 5.6%는 주68시간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13〉 주간 최대근로시간 (n=39, 복수응답)



〈그림 14〉 (상업영화) 주간 최대근로시간(n=18, 복수응답)



적용한 주간 최대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43.6%, ‘그렇다’ 응답 비율은 51.3%로 ‘그렇다’ 이상의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의 94.9%를 차지하였다.

상업영화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했을 때 ‘그렇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100%이며, ‘매우 그렇다’ 응답 비중이 61.1%(11건)로 표본 전체의 응답 비율과 비교하면 17.5%p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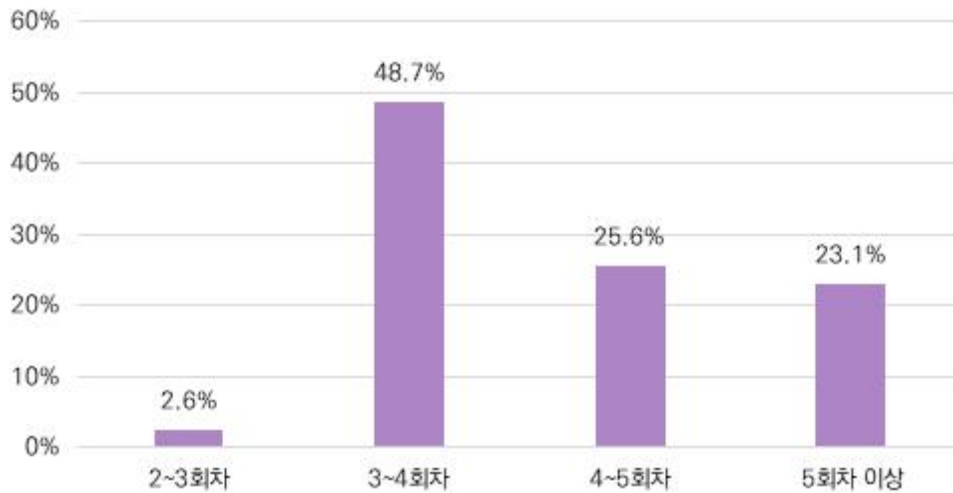
〈그림 15〉 주간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정도) (n=39) 〈그림 16〉 상업영화의 주간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정도) (n=18)



주간 최대근로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비회차 근로일수를 제외한 평균적인 주간 촬영일수(회차)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기 위한 질문에 '4~5회차' 25.6%, '3~4회차' 48.7%, '5회차 이상' 23.1%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17〉 평균적인 주간 촬영일수(회차) (비회차 근로일수 제외) (n=3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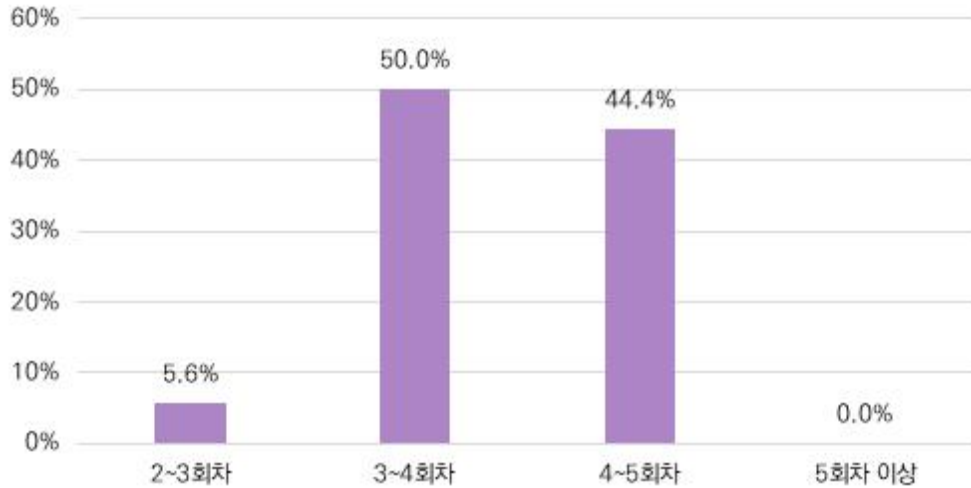


77.8%가 주52시간제를 택하였다고 답하였던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1주 '3회 이상~4회차 미만 촬영' 응답이 50.0%, '4회 이상~5회차 미만 촬영'이 44.4%, '2회 이상~3회차 미만 촬영'이 5.6%로 전체표본 대비 4~5회차와 3~4회차 촬영 비율이 더 높았고 '5회차 이상 촬영'하였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림 18〉 상업영화의 평균적인 주간 촬영일수(회차) (n=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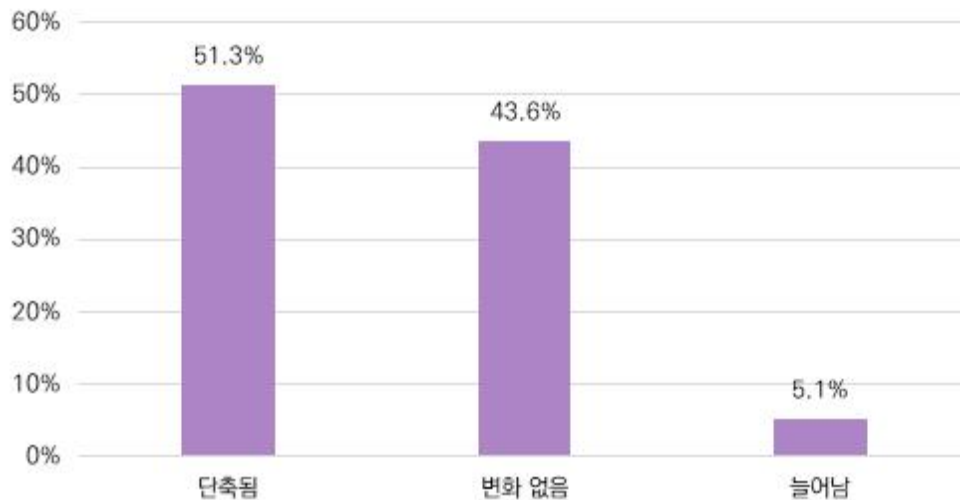
(단위: %)



주52시간제 도입 후 평균적인 주간 촬영 회차가 전작에 비해 줄어들었는지 질문 했을 때 '단축되었다'라는 답변 비율이 과반을 조금 넘는 51.3%로 가장 많았지만, '변화 없다'도 43.6%를 차지했고 '늘어남'으로 답변 한 비율은 5.1% 이었다.

〈그림 19〉 주간 평균 촬영 회차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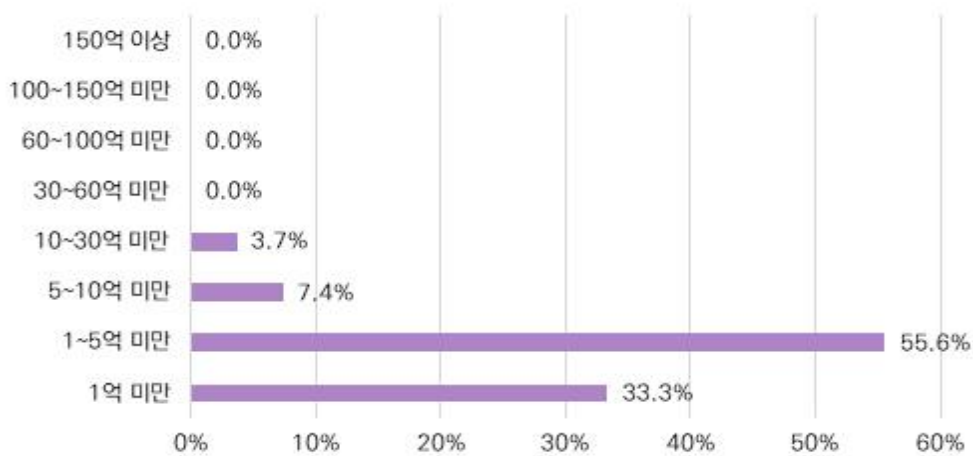


4) 근로계약서 미사용 작품 분석

스태프와 용역(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작품은 조사 응답 작품의 39.1%(27편)를 차지한다. 해당 작품을 순제작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순제작비 1억 미만의 영화가 33.3%, 순제작비 1억~5억 미만의 영화가 과반 이상인 55.6%, 5~10억 미만의 영화는 7.4%를 차지하여 용역계약을 사용하는 작품 대부분인 96.3%가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영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30억 미만의 영화는 3.7%를 차지한다.

〈그림 20〉 용역계약 체결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 (n=27)

(단위: %)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나 스태프 고용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30편을 대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유를 질문한 결과, 답변의 90%가 '낮은 제작비와 같은 예산상의 사유'라고 응답하였다.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없었다. 기타 응답은 작품을 드라마로 기획하여 드라마 제작방식으로 진행했거나 상업영화로 기획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표 16〉 근로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유 (n=30)

(단위: 건, %)

구분	빈도(편)	비중(%)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0	0.00%
낮은 제작비 등 예산상의 사유	27	90.00%
투자사가 원하지 않거나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한 제작비 산입 불인정 때문에	0	0.00%
4대 보험 공제금 부담 등의 사유로 스태프가 원하지 않아서	0	0.00%
기타	3	10.00%
계	30	100.00%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라 장시간 촬영은 대체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역 계약 작품의 노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한 사항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1일 12시간 이내 근로’는 85.2%, ‘최저임금 보장’과 ‘주간 최대근로시간 준수’는 각 63.0% 59.3%를 차지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작품 7.4%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기타 응답 11.1% 또한 있었다. 주52시간제 및 근로표준계약서 이용 문화의 정착 흐름이 산업에 포섭되기 어려운 저예산영화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과거와 같은 장시간 촬영 등의 관행은 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 용역(프리랜서) 계약 작품의 노무환경 개선 사항 (n=27, 복수응답)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1일 12시간 이내 근로	23	85.2%
시간외근로수당 준용 지급	1	3.7%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2	7.4%
주간 최대 근로시간 준수	16	59.3%
최저임금 보장	17	63.0%
해당 사항 없음	3	11.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	11.1%

근로표준계약서 미사용 작품의 프로듀서나 제작자 중에서 차기작 제작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를 차지했다. 예산 조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그 다음인 33.3%를 차지했는데 일정 순제작비 이하의 작품은 근로표준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사용하는 현상이 관행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차기작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향 (n=30)





5) 근로표준계약의 쟁점별 운용 현황

본 단락은 2021년 개봉작을 포함하여 과거 또는 현재까지 근로계약체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명을 대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현황 및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한 내용이다.

(1)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변화

주52시간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75%였다. 통상적인 영화 제작현장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시기가 2020년 1월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림 22〉 주52시간제 운용 작품 제작 또는 제작 참여 경험 (n=60)



주52시간 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제작 운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질문했다. ‘촬영 회차 및 촬영 기간의 확대’가 79.5%로 가장 높았고 ‘제작예산의 증액’이 72.7%로 2순위, ‘부서별 인력의 충원과 단기 보조 인력의 확대’가 68.2%로 3순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높은 비율로 응답한 내용은 ‘사전 준비 기간의 확대’(40.9%)와 ‘불필요한 근로 배제 등 철저한 근로시간 관리와 체크’ 38.6%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은 2.3%(1건)에 불과했다.

20) 상업영화 현장의 일부 메이저 투자배급사 작품들은 주52시간제 운용 노하우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공표된 2018년부터 느슨한 형태의 주52시간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표 18〉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작운용 방식의 변화 (복수응답, n=44)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촬영 회차 및 촬영 기간의 확대	35	79.5%
사전 준비 기간의 확대	18	40.9%
부서별 인력의 충원과 단기 보조인력 확대	30	68.2%
부서별 유닛(Unit)제의 도입	9	20.5%
불필요한 근로 배제 등 철저한 근로시간 관리와 체크	17	38.6%
제작 예산의 증액	32	72.7%
근로시간 체크 및 노무 전담 인력의 배치	13	29.5%
특별한 변화 없음	1	2.3%
기타	2	4.5%
전체 응답자(n)	44	100.0%

주52시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의 범위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50.0%가 '사전 준비, 사후 정리시간 포함한 촬영 회차 근로시간'을 주52시간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31.8%는 '사전 준비, 사후 정리시간 제외한 촬영 회차 근로시간'으로 답변하였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촬영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준비, 사후정리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및 비회차 근로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근로시간'이라는 답변은 15.9%를 차지했다. 기타 응답은 사전, 사후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촬영 근로시간 산정 및 비회차(휴차)의 근로시간 일부만 반영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표 19〉 주52시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의 실제 범위 (n=44)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사전 준비, 사후 정리시간 포함한 촬영회차 근로시간. 단, 비회차(휴차)근로 시간 제외	22	50.0%
사전 준비, 사후 정리시간 제외한 촬영회차 근로시간. 단, 비회차(휴차)근로 시간 제외	14	31.8%
사전 준비, 사후 정리시간 포함한 촬영회차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부서별 스태프의 비회차(휴차) 근로시간까지 모두 포함	7	15.9%
기타	1	2.3%
계	44	100.0%

비회차 근로까지 포함한 주간 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대응계획을 물었다. '주52시간을 넘어서는 비회차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하여 추가보수를 지급하거나 시급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44.1%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회차 근로가 많은 특정 부서 인원과 보조 인력을 확대 충원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란 답변은 11.9%로 낮은 편이었다. 이외 '탄력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상에서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운용할 계획'이란 답변은



20.3%를 차지했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답변도 18.6%를 차지했다.

〈표 20〉 비회차(휴차) 근로까지 포함한 주 52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대응계획 (n=59)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주52시간을 넘어서는 비회차 근로시간에 대해 쌍방 합의하여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시급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	26	44.1%
비회차 근로가 많은 특정 부서 인원 및 보조 인력을 확대 충원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	7	11.9%
탄력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에서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운용할 계획	12	20.3%
마땅한 대안이 없음	11	18.6%
기타	3	5.1%
계	59	100%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이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이나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정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최대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상에서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운용할 계획이란 응답이 20.3% 존재했듯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으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이 영화제작현장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현재 공표된 근로표준계약서 상 탄력근로제의 활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²¹⁾

타 영상 분야까지 포함하여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한 작품에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사 응답자의 10.1%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탄력근로제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험이 5.1%, 2021년 1월 5일 공포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4%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7% 순으로 응답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참여 작품의 영상 분야는 극장 개봉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66.7%, OTT 공개 목적의 영상 33.3%이었다.

21)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와 2021년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표 21〉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또는 참여 경험(타 영상분야 포함) (n=30)

(단위: 건, %)

구분	답변	비중
2주 단위	1	1.7%
3개월 이내	3	5.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21.1.5. 공표, 2021.4.6 시행)	2	3.4%
경험 없음	53	89.8%
계	59	100.0%

〈표 22〉 탄력적 근로시간제 참여 작품의 분야 (n=6)

(단위: 건, %)

구분	답변	비중
영화 (극장 개봉 목적)	4	66.7%
방송 드라마	0	0.0%
넷플릭스 등 OTT 영화, 드라마	2	33.3%
기타	0	0.0%
계	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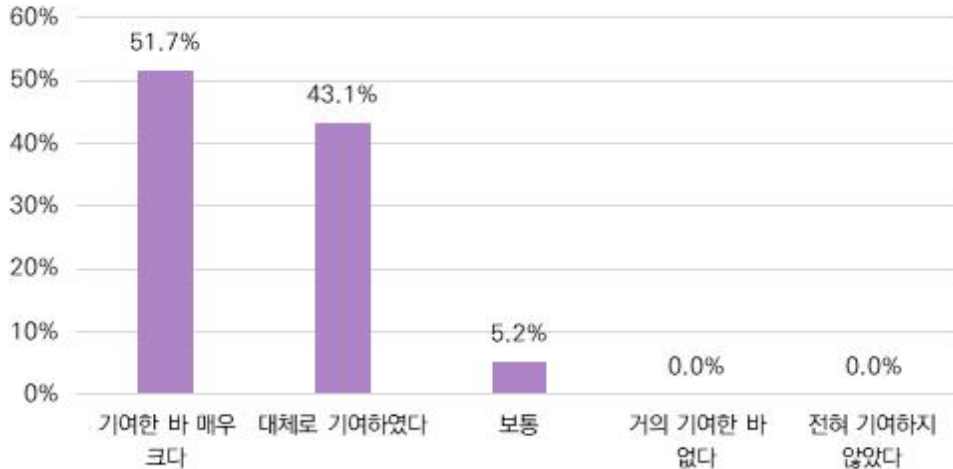
6) 근로표준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

근로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인 영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 및 스태프의 처우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기여한바 매우 크다’라는 응답이 51.7%, ‘대체로 기여하였다’라는 응답이 43.1%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94.8%가 긍정 응답하였다. ‘보통’ 응답은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부정평가 응답은 없었다.



〈그림 23〉 근로표준계약서 스태프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기여도 평가(n=59)

(단위: %)



근로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용과 방식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에서 개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개선하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현행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29.3%로 집계되었다. 근로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현장에서 적용한 지 5년이 넘어 근로시간 단축 등의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가 현장에 정착하였기에 사업장별 상황을 반영한 개별 협상과 합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의견 3.4% 역시 개별 사업장별 노사간 자율 합의 및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건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건을 상향 및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4%를 차지했다.

〈표 23〉 근로표준계약서 개선 방식과 내용 (n=58)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현행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건 완화	17	29.3%
현행 표준계약서의 일부 조건 상향 및 강화	2	3.4%
현행 유지하되, 현장에서 개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개선하거나 요구사항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34	58.6%
해당 의견 없음	3	5.2%
기타	2	3.4%
응답자수 계	58	100.0%

표준계약서의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76.5%는 ‘근로자 서면 합의사항’, 즉 1일 12시간



초과 근로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주휴일 및 휴게시간의 변경 시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는 단서 조건을 완화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응답했다. 2순위인 52.9%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으로 ‘탄력근로제 명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탄력근로제 역시 특정일 근로의 상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므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탄력근로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3순위 답변은 ‘해고예고조항’의 완화(36.4%)였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일 때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 통지의 예외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개정 근로표준계약서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다.

〈표 24〉 조항 완화 세부 내용 (n=17, 복수응답)

(단위: 건, %)

구분	답변	비중
근로자 서면합의 사항 축소 (1일 12시간 초과 근로, 주휴일 및 휴게의 변경 등)	13	76.5%
1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5	29.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으로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시	9	52.9%
해고예고의 기준	5	29.4%
기타	0	0.0%

표준계약서의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조항 강화가 필요한 내용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호 및 재해보상 조치 강화’를 꼽았다. 최근 영화스태프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후속조치 방안을 질문한 결과 산재보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22.4%, 제작사 부담으로 처리한 경우가 24.5%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18.4% 상해보험 처리가 16.3%로 응답²²⁾하여 여전히 영화현장의 산업재해 보상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5〉 조항 강화 세부 내용(n=2, 복수응답)

(단위: 건, %)

구분	답변(건)	비중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호 및 재해보상 조치 강화	2	100%
해고예고의 기준	0	0%
근로자 서면합의사항 추가	0	0%
기타	0	0%

22) 이종수 외,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2, 103면



3.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계약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영화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2년 최초 개발되었다. 5종으로 구성된 2012년 버전의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집필 규정, 작가의 수익배분 적용 구체화, 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영화계는 2012년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표준계약서의 장관 고시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2015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4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2015년에 제정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은 작가가 집필을 완료한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작사에게 이용 허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²³⁾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제작자와 작가가 집필 계약하는 경우 사용하는 ‘각본계약서’ 시나리오 원안을 각색하는 경우 사용하는 ‘각색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2012년 및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분	2012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2015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계약서의 종류	영화화 허락 계약서, 각본계약서 (원저작물용, 제작사용, 작가용), 각색계약서 (5종)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계약서,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4종)
각본 및 각색 기간	제한 없음	전체 집필 기간의 20%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수익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기준을 3가지 형태(제작사 순이익의 일정 비율, 전국관객 50만 명당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 특정 기준 시점에 일정 금액)에서 선택 -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계약과 각색 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수익 지분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을 작가의 수익지분으로 제시. -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함 - 각색계약만 제작사가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 가운데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화 이용허락/양도 계약이나 각본계약의 체결 시 작가에게 수익 지분 제공을 의무화
영화화 권리 기간	-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기간 5년	- 제작사의 영화화 기간 5년 이내로 설정(단, 주 촬영 개시한 경우 기간 만료 이후에도 영화화 지속 가능)

23) 영화화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영화화 양도 표준계약서는 각본의 영화화 권리를 제작사에 이전하는 것(양도)과 저작재산권자인 작가가 권리를 보유하면서 제작사가 각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외에 내용이 동일하다. 영화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차이가 발생한다. 즉 누군가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침해하면 이용허락의 경우 제작사는 직접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권리자인 작가가 직접 이에 대응해야 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 시나리오의 영화화 이전에는 작가가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할 수 없음	- 제작사가 작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를 제한(홀드백)하거나 양도받기 위해서는 그 저작재산권에 대해 작가와의 서면합의 및 별도 대가 지불 필요
--------------	---	---

나. 설문 응답 특성

1) 조사응답률

조사 대상 작품 113편 중 61편의 제작자, 프로듀서 또는 해당 작품 참여자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설문에 참여했다. 시나리오계약을 오래전 체결하여 설문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 근로표준계약서 설문조사와의 응답률 차이가 발생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한 2021년 실태조사의 조사응답률은 54.0%로, 근로표준계약서와 같이 유선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 지난 실태조사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아졌다²⁴⁾

〈표 27〉 2021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설문 범위 및 응답률

구분	편수
2021년 실질개봉작 / 극장개봉작(전체)	224편 / 653편
조사 대상 작품	113편
조사 응답 작품	61편
조사 응답률	54.0%

2) 조사 응답 작품의 특성

(1) 조사 응답 작품의 시나리오 계약 시기

설문 응답 작품 중 31.1%가 계약 미체결 작품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 2018년 계약체결 작품이 19.7% 2019년 작품이 18.0% 2020년 계약 작품이 14.8%를 차지했다. 계약 미체결작품 제외 시 개봉 시기로부터 1~3년 전 계약을 체결한 작품이 전체의 75.6%를 차지한다. 근로표준계약서 조사 결과와 다르게 시나리오계약 체결 이후 기획개발 기간이 포함되어 개봉 1~3년 전 작품 분포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24) 연도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조사 응답률: 2017(95.0%), 2018(100.0%), 2019(100.0%), 2020(97.5%)



〈표 28〉 조사 응답 작품의 시나리오 계약 체결 연도

(단위: 편, %)

연도	빈도	비중	계약 미체결 작품*을 제외한 비중
2010년	2	3.3%	4.8%
2016년	5	8.2%	11.9%
2017년	3	4.9%	7.1%
2018년	12	19.7%	28.6%
2019년	11	18.0%	26.2%
2020년	9	14.8%	21.4%
계약 미체결	19	31.1%	-
계	61	100.0%	

* 시나리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작품

(2) 조사 응답 작품의 배급사(투자사) 분포

2021년 10대 배급사²⁵⁾ 투자 작품 비중은 조사 응답 작품의 29.5%를 차지한다. 이 중 4대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투자 작품은 21.3%다. 조사 응답 작품의 대부분인 70.5%가 10대 배급사 이외의 작품이다. 기타로 분류한 작품은 KT알파(투자 당시 KTH)와 2020년 기준 10대 배급사 투자 작품 7편을 제외한 나머지가 영화사 자체 투자 작품, 코픽을 포함한 기관 지원 작품 또는 개인이 제작자금을 조달한 작품이다.

〈표 27〉 조사 응답 작품의 배급사별 분포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CJ ENM /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인먼트 / 쇼박스 / NEW	13	21.3%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메리크리스마스/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CJ CGV/리틀빅픽처스/스튜디오산타클로스	5	8.2%
기타	43	70.5%
계	61	100%

(3) 조사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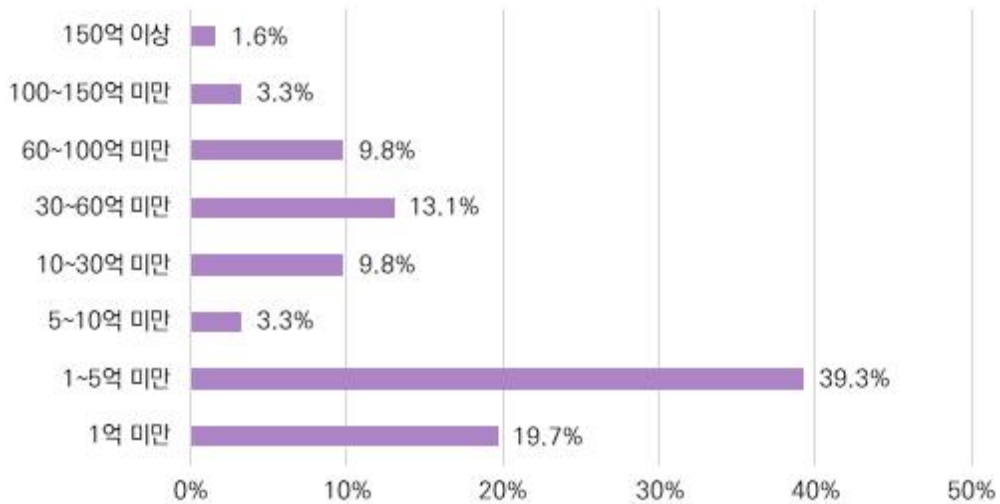
조사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순제작비 10억 미만 저예산영화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순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영화는 전체의 27.8%였다.

25)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한국영화 결산」, 2022, 46면 〈표 28〉 2021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 순위



〈그림 24〉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n=6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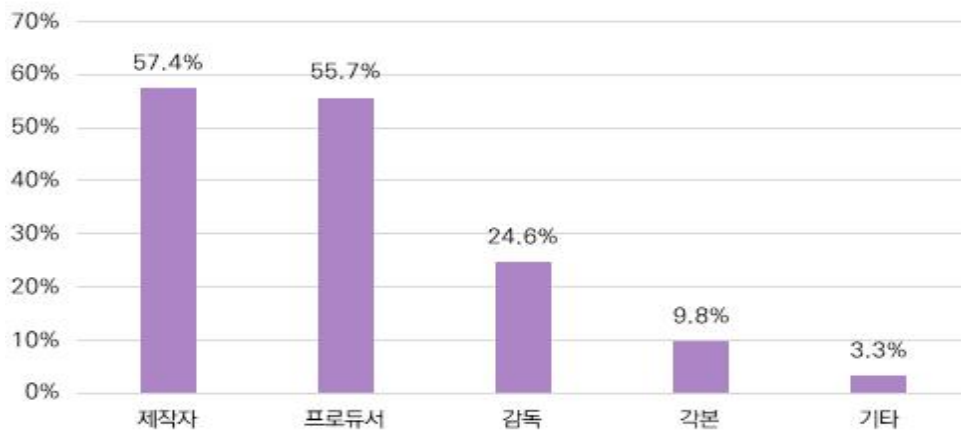


(4) 조사 응답자의 직책 분포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책 분포는 제작자 57.4%, 프로듀서 55.7%, 감독 24.6%, 각본 9.8% 순이었다. 이외 기타 3.3%는 해당 작품의 제작관리 분야 참여자라고 응답했다. 각본 작업에 참여하는 감독, 각본 직책이 34.4% 조사 응답에 참여하였는데, 대부분 제작사나 프로듀서를 겸하였다고 답하였다. 조사 대상 중 감독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저예산 영화의 비중이 높은 것과 감독이 직접 각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영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조사 응답자의 직책 분포 (n=61, 복수응답)

(단위: %)





다. 항목별 설문 분석

1)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인지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가 ‘알고 있다’ 이상으로 긍정 응답하였다. 이는 근로표준계약서의 활용 실태조사에서 ‘알고 있다’ 이상으로 긍정 응답한 97.1%보다 낮은 수치다.

〈그림 2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인지도

(단위: %)



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2021년 조사 응답 작품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5.9%로 조사되었다. 이는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표 30〉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n=61)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거의 그대로 사용	13	21.3%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체결	15	24.6%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회사 양식 계약서로 체결	12	19.7%
시나리오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21	34.4%
계	61	100.0%



〈표 31〉 최근 5년 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현황²⁶⁾

(단위: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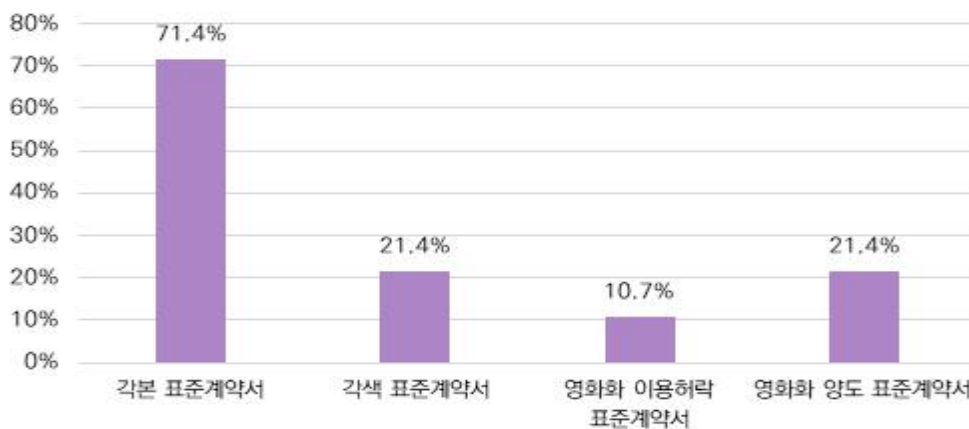
구분	2017년 개봉작		2018년 개봉작		2019년 개봉작		2020년 개봉작		2021년 개봉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거의 그대로 사용	11	19.3%	7	11.1%	17	22.9%	9	15.3%	13	21.3%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	7	12.3%	12	19.0%	13	17.6%	16	27.1%	15	24.6%
합계	18	31.6%	19	30.2%	30	40.5%	25	42.4%	28	45.9%

3)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종류별 사용 현황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중 각본 집필을 전제로 각본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각본 표준계약서’가 71.4%로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완성된 각본(초고)에 대한 거래 계약보다는 집필을 병행하며 진행되는 오리지널 기획이 여전히 더 선호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완성된 각본을 대상으로 각본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8건 있었는데,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종류별 인지도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한다. 완성된 각본에 대한 ‘영화화 양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21.4%, ‘영화화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사용 응답은 10.7%이다. 영화화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영화화 양도 표준계약서는 각본의 영화화 권리를 제작사에 이전하는 것(양도)과 저작재산권자인 작가가 권리를 보유하면서 제작사가 각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제외하면 내용이 같다. 이 중 이용허락 계약보다 제작사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7〉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종류별 사용 현황 (n=28, 복수응답)

(단위: %)



26) 2017년~2018년은 순제작비 4억 이상 개봉작, 2019년~2020년은 스크린 수 50개 이상의 개봉작 대상으로 조사했다.



4)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미사용 이유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28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의 71.4%가 표준계약서 사용 이유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이기에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인 14.3%가 ‘작가 또는 작가감독의 사용 요청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투자사의 사용 요청’ 때문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7.1%, 기획개발투자 시 모태펀드의 의무사용 요구로 인해 사용했다는 응답은 3.6%를 차지했다. 투자사의 사용 요청은 주로 중소영화 모태펀드의 의무사용 요청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기획개발의무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태펀드의 의무사용 요청 답변까지 포함하면 10.7%가 코픽의 행정조치와 관련된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픽의 조치가 제한적이거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표 3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이유(n=28)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작가 또는 작가감독의 사용 요청 때문	4	14.3%
기획개발투자 시 모태펀드의 의무사용 요구로	1	3.6%
투자사의 사용요청 때문	2	7.1%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이기에 사용	20	71.4%
코픽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용 의무 조건 때문에	0	0.0%
기타	1	3.6%
계	28	100.0%

전체 응답 중 시나리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표준계약서가 아닌 회사 자체 시나리오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33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제작자와 감독이 동일하여 시나리오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5%, ‘업계 통용 시나리오 계약서를 지속해서 써왔기에 표준계약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은 18.2%. ‘감독 연출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는 응답이 15.2%를 차지했다. 9%의 기타 응답은 예산상의 이유로 저예산영화여서 시나리오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미흡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0% 존재했다. 과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에서 주된 미사용 이유로 사용되던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또는 ‘표준계약서 공표 전 계약체결’ 답변은 이번 조사에서는 수집되지 않았다.



〈표 33〉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 (n=33)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0	0.0%
투자사가 원치 않아서	0	0.0%
감독 연출계약에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였기에	5	15.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표(2015.10.20) 이전 계약 체결	0	0.0%
정확한 권리부여 및 구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1	3.0%
업계 통용 시나리오계약서를 사용해왔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6	18.2%
제작자와 감독이 동일하여 시나리오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기에	18	54.5%
기타	3	9.1%
계	33	100.0%

5)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의 수정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적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본,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3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체결을 한 경우 수정한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래 결과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28명의 '주요 쟁점별 실제 계약 현황' 설문 결과를 토대로 수정 현황을 산출한 결과다.²⁷⁾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전체가 예시로 열거된 6개 조항 중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편 중 '시나리오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 및 별도 대가 지불' 조항을 수정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5년 이내)을 수정한 비율이 46.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집필 단계별 집필료 지급규정' 항목을 수정한 비율이 39.2%를 차지한다. (단, 완성된 각본을 계약 대상으로 하여 시나리오 집필 기간과 단계별 집필료 지급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표본을 제외할 경우 68.8%가 수정함) '각본작가 수익 지분 및 정산정보 제공' 조항을 수정한 비율은 28.6%를 차지한다. 주요 조항 가운데 수정이 가장 적었던 조항은 '크레딧 부여조건 및 이익제기 절차' 조항으로 수정 비율은 7.1%다.

27)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수정 내역과 수정 사유를 별도로 설문에서 질문했으나 수정내역에 응답한 수와 수정 사유에 응답한 수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며, 수정 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또는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설문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 34〉 각본,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권리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수정 내역(n=28, 복수응답)

(단위: 편, %)

구분	수정	미수정	해당 없음	비중	해당 없음 제외 시
시나리오 집필 기간 및 집필 회수	4	12	12	14.2%	25.0%
시나리오 집필 단계별 집필료 지급규정	11	5	12	39.2%	68.8%
각본작가 수익 지분 및 정산정보 제공	8	20	-	28.6%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5년 이내)	13	15	-	46.4%	
시나리오 2차적저작물작성권 귀속 및 별도 대가 지불	14	4	-	50.0%	
크레딧 부여조건 및 이의제기 절차	2	26	-	7.1%	

각색계약서의 경우 주요 조항이 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달라 결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했다. 3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외 각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6명의 응답자 중 75%가 ‘각색 작가 인센티브 지급’ 조항 및 ‘각색료 지급 및 시기’ 조항을 수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각색 시나리오 저작권 귀속’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답변은 37.5%를 차지했다. 각색표준계약서의 경우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필수로 부여하지 않고, 각색된 각본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표 35〉 각색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수정 내역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각색 작가 인센티브 지급	6	75.0%
각색료 지급 및 시기	6	75.0%
각색 시나리오 저작권의 제작사 귀속	3	37.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	0.0%

6) 주요 쟁점별 실제 계약 현황

본 단락에서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시나리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모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제 영화제작 현장의 시나리오계약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²⁸⁾. 본 단락 조사내용을 통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영화제작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응답 61건 중 계약 미체결과 무응답을 제외한 38건의 설문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별 실제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다.

28) 감독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답변한 2건이 쟁점별 실제 계약의 내용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건은 감독이 투자사와 직접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한건은 조사에 응할 만큼 세부 내용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밝혔다.



(1) 시나리오 집필 기간 및 집필 회수 명시 여부

각본 또는 각색 표준계약서에서는 시나리오 집필 기간과 집필 회수를 명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계약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에서 권장하는 집필기간과 집필 회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비율은 78.2%를 차지한다.

〈표 36〉 시나리오 집필기간 및 집필 회수 명시 여부 (n=38)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해당없음 제외 시	
			빈도	비중
그렇다	18	47.4%	18	78.2%
아니다	5	13.2%	5	21.7%
완성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하여 해당 사항 없음	15	39.5%	-	
계	38	100.0%	23	

아래와 표와 같이 순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집필기간 및 회수 명시 비율은 75.0%로 전체표본의 대상으로 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다.

〈표 37〉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이상)의 각본 및 각색집필계약 체결 시, 집필기간 및 회수 명시여부(n=16)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해당없음 제외 시	
			빈도	비중
그렇다	12	75.0%	12	85.7%
아니다	2	12.5%	2	14.3%
완성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하여 해당 사항 없음	2	12.5%		
계	16	100.0%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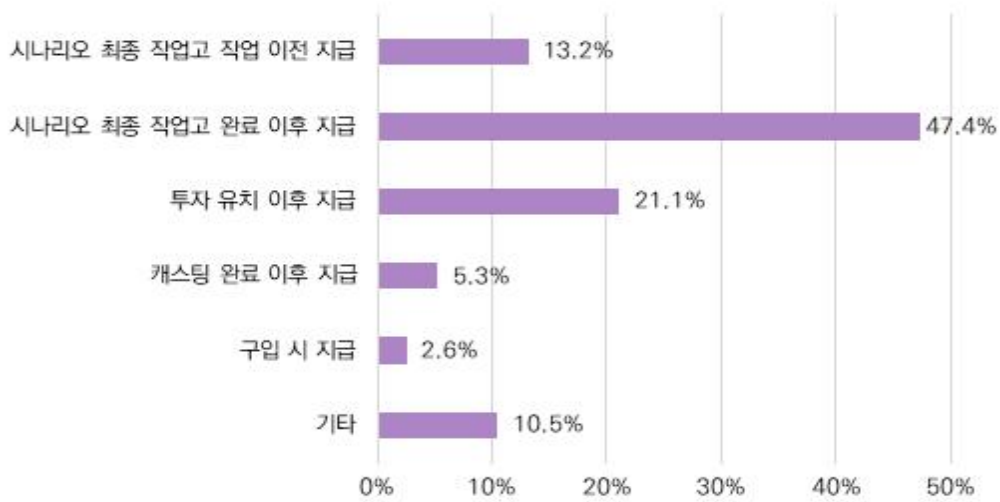
(2) 각본 잔금의 지급 시기

집필을 전제로 하는 각본과 각색 표준계약서에서는 집필 작업 시작 전에 작업비 선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잔금 미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각본 집필 계약 체결 시, 잔금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을 때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하는 대로 ‘최종 작업고 작업 전 지급’ 하는 사례는 13.2%에 불과했다. ‘최종 작업고 완료 후 지급’은 47.4%를 차지하여 작업 전 또는 작업 직후 각본료를 지급하는 비중은 60.6%를 차지하였다. 투자 유치 이후 지급 및 캐스팅 완료 이후 지급은 전체의 26.4%를 차지한다. 질문의 기타 응답으로는 ‘구입 직후 지급’, ‘투자 유치부터 크랭크업까지 단계별 지급’, ‘촬영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 등이 있었는데 구입 직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 유치/촬영을 전제로 각본료가 지급되는 계약은 잔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계약이다.



〈그림 28〉 각본료 잔금의 지급 시기 (n=38)

(단위: %)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표본을 한정하면 표준계약서가 권고하는 내용대로 ‘최종고 작업 전 지급’ 비중은 전체 표본과 유사한 12.5%였으나, ‘최종 작업고 완료 후 지급’으로 명시한 경우는 전체의 56.3%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보다 높은 비율이다.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할 때 작업 전 또는 작업 직후 각본료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로 이 역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보다 소폭 상승한 비율이다.

〈그림 29〉 상업영화의 각본료 잔금의 지급 시기(n=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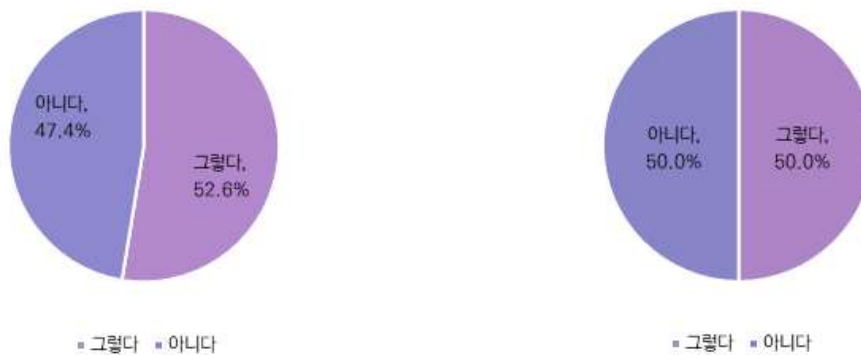


(3)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의 특정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²⁹⁾을 준용하여 영화화 권리 기간을 5년 이내로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명시했다’라는 응답이 52.6%를 차지했다.

상업영화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했을 때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슷한 비중인 50.0%가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을 특정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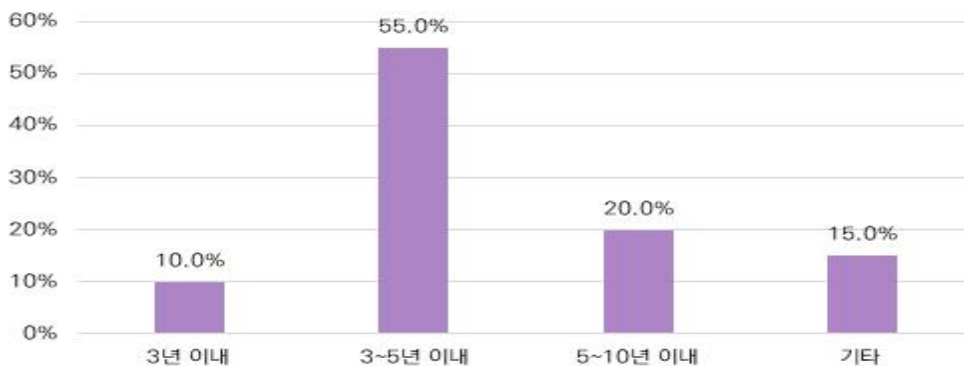
〈그림 30〉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의 특정 여부 (n=38) 〈그림 31〉 (상업영화)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의 특정 여부(n=16)



영화화 권리귀속의 특정 기한은 ‘3년~5년 이내’가 55.0%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이내’가 20.0%, ‘3년 이내’가 10%를 차지했다. 표준계약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5년 이하로 영화화 권리귀속 기한을 특정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그림 32〉 영화화 권리 귀속의 특정 기한

(단위: %)



29) 「저작권법」 제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을 특정한 시나리오 계약서의 종류로는 ‘각본계약서’가 65.0%, ‘영화화권리 양도계약서’ 30.0%(5건), ‘영화화이용허락계약서’ 10.0%를 차지한다. 이 외 원작에 대한 영화화 양도(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도 5.0% 존재했다.

〈표 38〉 영화화 권리귀속 기간 특정한 시나리오계약서 종류 (n=20, 복수응답)

(단위: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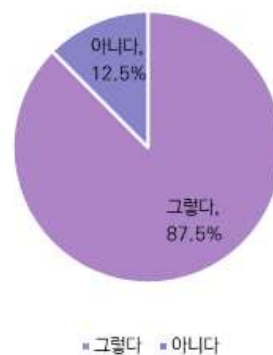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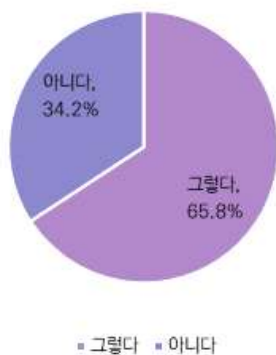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각본(집필)계약서	13	65.0%
기 완성된 시나리오(각본)에 대한 영화화권리 양도 계약	6	30.0%
기 완성된 시나리오(각본)에 대한 영화화권리 이용허락 계약	2	10.0%
원작(소설, 웹툰 등)에 대한 영화화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	1	5.0%
기타	0	0.0%

(4) 각본작가 수익지분 부여 및 수익 정산정보의 제공

각색계약서를 제외한 3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 작가에게 제작사 몫 수익지분의 일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수익지분을 0%로 하거나 빈칸으로 두지 못한다. 작가가 집필한 각본을 원저작물로 하는 영화에 대한 작가의 수익지분 부여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 조항으로, 과거에는 일부 시나리오 작가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긴 하였으나 수익지분 부여가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각본작가에게 수익지분을 부여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계약서상 각본작가에게 수익지분을 부여했다는 답변은 65.8%로 나타났다.

〈그림 33〉 각본작가 수익 지분 부여 여부(n=38)

〈그림 34〉 상업영화 각본작가 수익지분 부여 여부(n=16)



상업영화만을 별도로 분류했을 때 각본작가에게 수익지분을 부여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표본보다 크게 상회하는 87.5%다. 상업영화의 경우 대부분 각본작가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수익지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지분을 부여한 계약서의 종류를 질문했을 때 각본집필계약서가 68.0% 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가 28.0%, 영화화권리이용허락계약서 8.0%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기타 응답 12%는 감독 각본으로 연출계약서의 수익지분으로 같음했다고 응답했다.

〈표 39〉 수익지분 부여 계약서의 종류 (n=25)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각본(집필)계약서	17	68.0%
(완성된 시나리오)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	7	28.0%
(완성된 시나리오)영화화권리이용허락계약서	2	8.0%
기타	3	12.0%
	25	100.0%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서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정산서를 정산기준일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익지분을 가진 자가 이에 대한 정산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지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의 정산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분배의 투명성을 담보 받을 수 없기에 작가에게 중요한 권리 사항이다.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기적인 수익 정산정보 제공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2.0%가 '수익 정산정보 제공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익 정산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답변했다. 8.0%은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순수익 발생 시 수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수익 정산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없었다.

〈표 40〉 정기적인 수익정산 정보 제공의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여부(n=25)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수익정산 정보 제공 계약서 명시, 수익정산 정보 제공 이행	23	92.0%
수익정산 정보 제공 계약서 미명시, 순수익 발생시 수익정산 정보 제공	2	8.0%
수익정산 정보 제공 계약서 미명시, 수익정산 정보 미제공	0	0.0%
기타	0	0.0%
계	25	100.0%



(5)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유주체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출판, 공연, 등 각종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보유 주체는 누구인지 질문했을 때 60.5%가 '영화와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제작사(또는 투자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21.1%는 '제작사-작가(또는 작가감독)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1.6%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창작자로부터 양도받거나 공동 보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타 답변은 'OTT 영상물로 기획하여 제작을 시작한 작품이어서 OTT 영상물 기준과 같게 제작사, 감독, 작가 모두 성과급은 물론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표 41〉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유 주체 (n=11)

(단위: 편, %)

구분	빈도	비중
제작사(또는 투자사)가 영화 및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유	23	60.5%
제작사-작가(또는 작가감독) 공동 보유	8	21.1%
작가(작가감독) 보유	4	10.5%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확보하지 않음	1	2.6%
원작이 있는 계약이라서 시나리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확보 불가능	1	2.6%
기타	1	2.6%
계	38	100.0%

(6)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또는 홀드백 대가 별도 지불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사 또는 투자사가 확보할 경우 작가에게 별도 대가를 창작 기여분 만큼 지불하는지 질문했을 때 '별도 지불'했거나 '해당 권리 양도나 이용허락 건수 발생 시 작가에게 별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38.7%,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1.3%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의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표 42〉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또는 홀드백 대가 지불 여부(n=31)

(단위: 편, %)

구분	분포	비중
별도 지불함	6	19.4%
권리 양도나 또는 이용허락 건수 발생 시 작가에게 별도 지불하기로 약정	6	19.4%
별도 지불하지 않음(각본료에 포함되어 있음)	19	61.3%
기타	0	0.0%
계	31	100.0%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줄였을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작사가 확보한 경우 작가에게 각본료 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대가를 별도 지급했거나 추후 거래 발생 시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응답이 50.0%를 차지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보다 수치가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상업영화 역시 작가에게 별도 대가 지불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작사(투자사)가 확보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3〉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 이상)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가 별도 지불 여부(n=14)

(단위: 편, %)

구분	분포	비중
별도 지불함	4	28.6%
권리 양도나 또는 이용허락 진수 발생 시 작가에게 별도 지불하기로 약정	3	21.4%
별도 지불하지 않음 (각본료에 포함되어 있음)	7	50.0%
기타	0	0.0%
계	14	100.0%

(7) 크레딧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크레딧의 크기, 위치, 병기 순서에 대해 작가와 제작사가 사전에 상호 협의하되, 크레딧 최종 결정 사항을 촬영 종료 전까지 해당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작가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통보한 크레딧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전통적으로 작가보다 감독의 창작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기에 작가의 업계 내 입지 부족은 오랫동안 크레딧 문제로 노출되었었다. 크레딧의 최종 결정은 대부분 제작사와 감독의 주도로 최종편집 단계에서 결정되고 작가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사전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³⁰⁾

응답자의 68.4%가 표준계약서에서 권고하는 대로 ‘크레딧 크기, 위치, 병기 순서에 대해 사전에 작가와 협의, 촬영 종료 전 통보, 이의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답하였고, ‘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전 상호 협의, 촬영 종료 전 통보, 이의 조정 절차를 모두 실행하였다’라는 답변 또한 21.1%를 차지했다.

30) 이혜정 외,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38~39면



〈표 44〉 크레딧 명시 원칙 (n=38)

(단위: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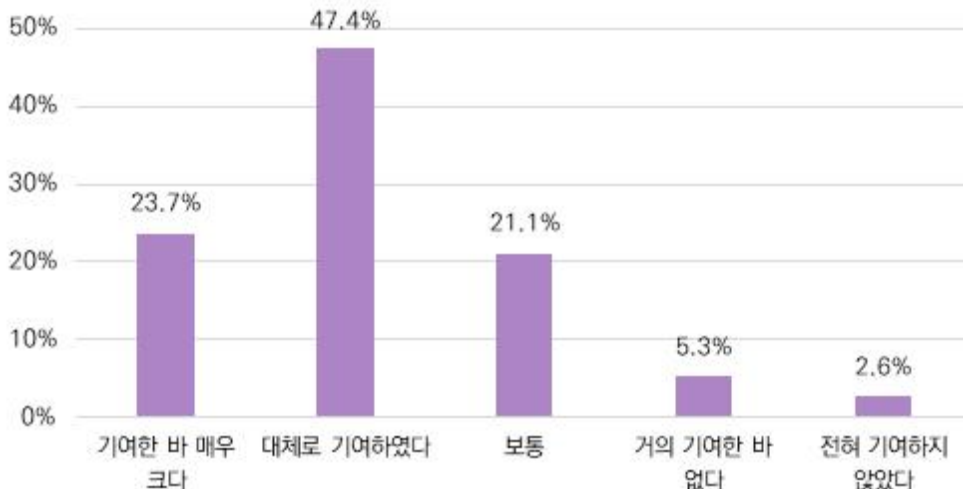
구분	분포	비중
크레딧 크기, 위치, 병기 순서에 대해 사전 작가 협의, 촬영 종료 전 통보, 이의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그대로 실행	26	68.4%
계약서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사전 상호 협의, 촬영 종료 전 통보, 이의 조정 절차 진행	8	21.1%
촬영 종료 전 작가 통보 없이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0	0.0%
창작기여도 판단보다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크레딧대로 제작사가 결정하여 명시	3	7.9%
기타	1	2.6%
계	38	100.0%

4)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기여도 평가 및 개선 의견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사간의 계약 관행 개선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의 이해와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을 때 ‘대체로 기여하였다’ 이상의 긍정 응답은 71.1%로 근로표준계약서에 대한 긍정 평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21.1% 나머지는 ‘거의 기여한 바 없다’(5.3%)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2.6%)로 응답했다.

〈그림 35〉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n=38)

(단위: %)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71.1%)은 근로표준계약서 기여도의 긍정 평가 비율(94.8%)보다 23.7%p 낮다. ‘매우 기여하였다’라는 최상위 평가 비율 역시 근로표준계약서(51.7%)의



최상위 평가 비율보다 28.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나리오 작가 권리 증진, 저작권 정립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및 ‘작가와의 계약에서 쌍방의 권리 부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로 타당하다’라는 긍정 평가(73.6%)와 ‘저작권의 권리 부여 기준과 그에 따른 권리의 구분과 정립에 형평성이 부족한 일부 표준계약서가 있어 계약 당사자 간에 혼선을 주거나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및 ‘원안이나 원작이 존재하는 각본(집필)계약의 권리 관계 정립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부정 또는 개선 의견이 (60.5%) 과반 이상의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5〉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평소 견해 (n=38, 복수응답)

(단위: 편, %)

구분	분포	비중
사용해보거나 검토해 본적이 없어서 별도 의견이 없다	4	10.5%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나리오 작가 권리 증진, 저작권 정립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17	44.7%
작가와의 계약이나 거래에서 쌍방의 권리 부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로 공평 타당하다	11	28.9%
저작권의 권리 부여 기준과 그에 따른 권리의 구분과 정립에 형평성이 부족한 일부 표준계약서가 있어 계약 당사자 간에 혼선을 주거나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7	18.4%
‘원안’이나 ‘원작’이 존재하는 각본(집필)계약의 권리 관계 정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10	26.3%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과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6	15.8%
기타	4	10.5%



4. 결론 및 시사점

가. 근로표준계약서 설문 결과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 이후 제작 기간의 확대, 인건비 상승, 제작인력의 증가로 인한 평균제작비 증가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현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가 선제적으로 도입되며 근로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 제작 노하우가 다방면으로 축적되었다. 2021년 개봉작 기준 순제작비 5억 이상의 작품 90%가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저예산 영화를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문화가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수준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산업의 영역에 포섭하기 힘든 저예산 영화가 제외된 수치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표준계약서 미사용의 주된 사유는 예산상의 어려움이다. 순제작비 5억 이하의 작품은 현실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실상이다. 이런 이유로 저예산 영화가 주를 이루는 독립/예술영화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로표준계약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으나, 순제작비 5억 이하 작품의 설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항을 근로표준계약서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초저예산 영화의 적용은 쉽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차기작 제작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향을 질문했을 때 예산조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33.3%를 차지했다. 일정 순제작비 이하의 작품은 근로표준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을 사용하는 현상이 관대화 되는 상황이다. 또한, 저예산 영화로 갈수록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적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근로표준계약서 정착 이후 4대 보험 가입은 점차 안정화 된 추세지만 본 조사에서 원하는 스태프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15.4%,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품은 23.1%를 차지하며 여전히 4대보험 미가입 작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응답한 작품 23.1%(8편) 중 1편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이다.

시간급 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표준계약서가 공표되었음에도, 포괄급 임금이 시간급 임금보다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덕션 운용 경험이 누적되어 제작사와 스태프 모두 근로시간 예측이 가능해진 데다가, 주52시간으로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면서 월별 임금이 고정되는 포괄급 임금이 다시 선호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가 법적 유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포괄계산으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한 27편 중 12편이 '실제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수준의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근로시간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비회차 근로나 촬영시간 이외 근로가 잦은 부서인 소품, 미술, 제작 스태프의 평균 근로일수가(소품 6.2일, 미술 5.9일, 제작5.8일) 전체 스태프의 1주 평균 근로일수(5.3일)보다 높은 것을 볼 때³¹⁾ 사전 준비시간을

31) 이종수 외, 「2020년 근로환경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20, 97면



포함하여 주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52시간을 넘어서는 비회차 근로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으로 별도 책정하여 시간급을 추가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란 의견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 이후 극장 상영관에서 OTT 플랫폼으로 영화/영상물 관람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제작 편수가 줄었고, 영화 인력들이 방송, 드라마, OTT 오리지널 작품 제작현장을 넘나들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 가운데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된 영화 제작 환경과 달리 방송, 드라마, OTT 영상물의 제작 환경이 영화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아예 배제하거나 위법 수준의 탄력근로제³²⁾와 같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화산업의 근로계약 제작 시스템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토로하였고, 영화/영상물 제작에 통용되는 범용 근로 기준을 통합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되었다. 영화, OTT 영상물 등에 대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영상물 근로표준계약서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영화의 정의가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다.

나.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설문 결과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최근 5년간 점차 상승했지만, 여전히 사용 비율이 전체의 50%를 밑돌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산출된 사용률은 개봉작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계약체결 이후 개봉으로 이어지지 못한 작품이 여럿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조사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본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20편 중 8편이 완성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자의 일부가 4종의 차이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종류별 인지도 부족 및 계약서 사용 가이드가 확산되지 않은 것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계약서의 개정 전 창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창작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제작자-창작자 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견해 차이 개선이 필요하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관련 견해를 질문했을 때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시나리오표준계약서가 지나치게 작가의 권리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제작 직군의 주관식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아 여전히 제작자-창작자 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 집필 방식 또는 영화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견해나 개선 의견을 질문했을 때 원작 또는 원안이 존재하는 경우와

32) 특정일, 특정주의 최대 근로시간이나 연속 휴식시간의 보장 없이 무조건 3개월 평균 주52시간 촬영하는 행태로 3개월 분량을 1개월에 찍는 경우도 있고, 연속 24시간, 36시간 이상 촬영하는 경우.



여러 명과 순차적으로 각본 작업하게 될 경우의 권리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집계되었다. 원안 또는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인 영화화 권리귀속 기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수정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화 전까지 오랜 시간 협업을 거치는 시나리오 작업 특성상 집필 단계에서 작품의 영화화가 되는 최종 각본의 최종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어 각본계약 체결 과정에 수익지분을 필수로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영화화 전까지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거치는 시나리오 작업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 사례를 안내하거나 상황별로 특약 사항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타 영상 분야 진출, 활동 영역 확장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OTT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물 제작이 크게 확대되며 저작권(IP)을 모두 플랫폼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화 창작자와 제작사 모두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화, 방송, OTT를 포괄하는 시나리오계약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영화인들이 타 영상 분야 제작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자, 제작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다.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방안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근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계약체결 당사자의 사용 인식도에 기반을 두어 집계한 사용률이라는 점에서 실제 계약체결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모두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대비 실제 주요 조항의 수정 비율이 높았는데, 수정 사유는 개별 계약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표준계약서의 한계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어느 범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 엄밀히 구분하기 힘들며, 법적으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한 표준약관과 달리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따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계약서의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코픽은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해 각종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표준계약서 사용 작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 출자 펀드의 투자, 재정지원 역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은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의 범위에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산업 전체로의 표준계약서 확산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정되며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규제를 확대하기 힘들다.

산업의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확산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표준계약서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간단해질수록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보편화 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



데다,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창작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작업, 계약 특성을 특약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례 가이드를 소개하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가진다. 표준계약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산업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으로 구성하되, 불리한 위치의 계약 당사자를 위해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법률자문 등의 후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보고서

- 박현섭 외,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 영화진흥위원회, 2011
- 강석홍 외,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한국예술경영연구소, 2012
- 김소라, 「한국과 미국 계약제도의 비교」, 건축과사회 23, 2013
- 김선미,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핵심 정리」, 영화진흥위원회, 2015
- 송경원, 「시나리오 크레딧, 논쟁의 중심에 서다」, 영화진흥위원회, 2015
- 도동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정과 영화산업」, 영화진흥위원회, 2018
- 이혜정 외,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 안병한,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 2019
- 신다영, 「2019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미발간 자료, 2020
- 김경선 외, 「2018년 한국영화산업 창작부문 공정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20
- 김유미 외,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 신다영, 「2020년 한국영화 개봉작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미발간 자료, 2021
- 이종수 외,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2
-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규정 주요 내용」, 2021.03.23.

인터넷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
-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인터넷 기사

- 박정환, 〈법원 "정부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소송 대상 아니다"〉, 뉴스1, 2021.11.15., <https://www.news1.kr/articles/4492735>

kofic 영화진흥위원회